

제5절 토지구획정리

1.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본방향

가. 목 적

토지구획정리사업이란 정비되지 아니한 시가지의 일정구역 안에서 모든 토지소유자로부터 각 토지의 면적이나 위치 등에 상응하는 일정량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(이를 "감보"라 한다.) 이 재원으로 도로,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적정규모로 시공하고 택지로 사용될 잔여 토지를 공공시설과 맞추어서 구획, 형질 등의 변경을 실시함으로써 토지의 이용가치를 종래보다 높여 건전한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.

나. 방 침

대리조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·분합 기타의 구획 변경,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함.

2.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

지구	규모 (㎡)	사업기간	지 구 지 정	지구단위 계획결정	시 행 인 가	환 지 인 가	공 사 준 공	진행사항
도림 지구	155,990	'01.12.28 ~ '10. 6.30	'94.12.29	'00. 6.30	'01.12.28	'02. 7. 8	'07.10.30.	- 환지확정 처분용역 착수

3. 2009년 추진실적

가.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

- '07. 10. 30 : 기반시설공사 준공
- '09. 9. 18 : 지적확정측량용역 추가 용역 착수
- '10. 1. 20 : 도림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입안(안)열람·공고
(1.20 ~ 2.4, 14일간)

나. 향후 발전방향 또는 전망

- 향후 난개발로 인한 주민 불편 등 예상되는 도시문제 예방
-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
- 친환경적 토지개발을 통한 택지공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4. 2010년 추진계획**❖ 도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**

- '10. 3월 : 환지처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,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 변경 추진
- '10. 4 ~ 5월 : 환지처분 및 등기촉탁
- '10. 6월 : 환지청산금 징·교부 추진

■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

